

감사위원회 규정

주식회사 HJ중공업

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구성]

-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
- ②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.

제3조 [위원장]

-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.
- ③ 전 항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임하고, 임시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[권한 및 기능]

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
2.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
3. 외부감사인 선정, 변경 및 해임 요청
4. 이사회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
5. 감사보고서의 작성
6.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및 집행
7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
8.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
9. 기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제5조 [감사결과]

감사위원은 감사 및 감사결과에 대하여 각자가 감사위원회를 대표한다. 다만,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감사위원 총수의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.

제6조 [감사록]

- ①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다만 전조 단서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명의로 별도의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7조 [간사]

- ① 감사위원회에 간사를 둔다
- ② 회계총괄담당임원은 감사위원회에 간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무전반을 관장한다.

제8조 [준용규정]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회의소집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**제1조 [시행일]**

- 1.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3. 이 규정은 2019년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